

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3. 30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 3. 30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27호)
- 상 정 : 2007. 4. 16.(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. 제안이유

신청사 신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사천시청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사천시 소재지를 “벌리동 427-1번지” 에서 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” 로 변경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신축공사가 완공되고, 신청사 개청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천시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